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81
----------	----

2022. 09. 22.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8. 29. 최재란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2. 9. 2.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2022. 9. 22.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공간정보 개방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등).
- 나.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사업자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보안 심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다. 공간정보 사용기업에 대한 보안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 라. 기타 제호 및 조문 체계, 자구를 정비함.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가.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21년 3월에 개정¹⁾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과 '22년 3월 공포·시행²⁾된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기타 자구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2022년 8월 29일 최재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참고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³⁾를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사업자'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한 '보안심사'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21.03.16.) 주요내용

- ◆ (산업계 제공 근거)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제34조)
- ◆ (보안심사 제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이 심사토록하고, 보안심사의 세부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제35조의2)
- ◆ (전문기관 지정)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사용기업에 대한 보안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제35조의3)

1) 법률 제17942호, 2021.3.16. 일부개정, 2022.3.17. 시행. (제35조제2항 등 신설)
 2) 대통령령 제32541호, 2022.3.15. 일부개정, 2022.3.17. 시행.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3)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함.(「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를 의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를 의미

나.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

1) 제명 및 조문 체계 정비

- 현행 조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운데, 제명이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 자칫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⁵⁾과 연관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⁶⁾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⁷⁾에 따라 조문 순서와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비하였음.
- 현행 조례는 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로 최초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이 폐지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부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조례명 일부(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가 계속 잔존해 온 것으로 파악됨.
- 개정안은 현행 조례(3개장 16개조)에 1개 장과 5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고, 10개 조문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순서변경 5개, 일부 내용 변경 5개)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기본법에 상응하게 정비하였음.

5) 해당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음.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17개 중 7곳은 조례가 미제정이며, 운용되고 있는 10개 중 7개는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기준일 2022.09.05.

7) “상위법령이 있는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의 조문순서를 상위법령의 조문순서를 따라 배열하는 것이 전체 규율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위법령에서 편·장·절 등을 구분하고 있으면 자치법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편·장·절 등을 구분해주는 것이 좋다.”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 현행 조례와의 비교 >

현행	개정안	비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일부 내용 변경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2장 시 공간정보체계의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제4조(공간정보사업의 추진)	제4조(공간정보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
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일부 내용 변경
제7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현행 제10조와 같음
< 신 설 >	제3장 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현행 제6조와 같음
제11조(중복투자 방지)	제10조(중복투자 방지)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9조(공간정보 목록관리)	제11조(공간정보 목록관리)	현행 제9조에서 이동 및 일부 내용 변경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	< 삭 제 >	
제12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제12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간정보 유통)	제13조(공간정보 유통)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일부 내용 변경 및 신설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보호	
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제16조(보안관리)	일부 내용 변경 및 삭제
< 신 설 >	제17조(보안심사)	신설
< 신 설 >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신설
< 신 설 >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 신 설 >	제20조(보고 및 조사)	신설
< 신 설 >	제21조(시행규칙)	신설

-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구성을 정비하는 것은 관계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준수하여 법체계상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기한의 변경(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서울시가 기관별 시행계획(‘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8)에 맞춰 현행 “1월 31일”에서 “10월 31일 이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제출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간정보정책 관련 법정계획〉 (현행 조례 기준)

수립주체	법정계획	수립주기	근거규정
정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기본계획’)	5년	기본법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 (‘기관별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매년	기본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관리기관의 장 (서울시,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공사·공단, 국토부장관 고시 민간기관)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사업별 시행계획	매년	조례 제5조

- 기본법 제7조9) 및 시행령 제13조10)에 따라 서울시장은 다음 연도의

8) ‘22.03.15. 공포시행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개정 2013. 3. 23.>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을 법정기한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¹¹⁾,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면서 제출 주체인 **관계기관의 장**¹²⁾을 변경(축소)¹³⁾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서울시</u>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u>수립·시행</u> 한다.	제5조(시 <u>공간정보체계</u>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 ----- ----- ----- 시 ----- ----- <u>수립</u> 한다.	제5조(시 <u>공간정보정책</u>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 ----- ----- ----- 시 ----- ----- <u>수립</u> 한다.
② <u>관리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u>시행계획</u> 과 <u>사업별 시행계획</u> 을 수립하여 <u>시장(공간정보담당관)</u> 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② <u>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u> 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u>시행계획</u> 을 수립하기 위하여 <u>사업별 시행계획</u> 을 매년 <u>10월 31일</u>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u>관리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u>시행계획 수립에 필요</u> 한 <u>사업별 시행계획</u> 을 매년 <u>8월 31일</u>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 11)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작성지침(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2021.11)에 따라, 시·군·구는 광역시·도에, 광역시·도는 국토부에 ‘**사업별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광역시·도는 소관 시·군·구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종합하여 시행계획 종합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해야 함. (검토보고서 **붙임2** 2022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종합표 참고)
- 12)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조례 제2조제5호)
- 13) 개정안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 중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제외하였음.

3)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과 보안관리(안 제14조, 안 제16조)

- 안 제14조는 기본법 제34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임의규정)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안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상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문의 신설은 가능하겠으나 이를 조례상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음.

〈공간정보 제공관련 규정〉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조례안
<p>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신설 2021. 3. 16.></p>	<p>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p> <p>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u>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신설 2022. 3.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2.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p>제14조(공간정보의 제공)</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p> <p>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시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 한편, 안 제16조에서는 보안관리와 관련한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p> <p>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6조(보안관리)</p> <p>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4) 보안심사와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안으로, 안 제17조(보안심사)는 기본법 제35조의2(보안심사)를, 안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는 기본법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안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는 기본법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안 제20조(보고 및 조사)는 기본법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그 밖에 안 제21조(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 상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¹⁴⁾하여 운용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입법불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다.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세부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제명 변경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그 밖에 상위법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기한 변경 및 기타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은 인정됨.
 -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단순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음.
- 현행 조례는 지난 2002년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조례」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한 차례 전부개정과 세 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조문체계를 단순정비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이 조례의 내용 상당수가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재차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14) 서울특별시규칙 제3289호, 2003.1.30.제정, 2003.1.30.시행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을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법체계상 통일성을 도모하고, 사업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변경함. (안 제5조)
- 안 제16조는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나,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행을 유지함. (안 제16조)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
----------	----------

제안일자 : 2022. 09. 22.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을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법체계상 통일성을 도모하고, 사업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변경함. (안 제5조)
- 안 제16조는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나,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행을 유지함. (안 제16조)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제목 “(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함. (안 제5조)
- 안 제5조제2항 중 “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으로, “10월 31일”을 “8월 31일”로 수정함. (안 제5조제2항)
- 안 제1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현행 제2항과 같이 신설함. (안 제16조)
- 자구 수정 및 개정지시문 순서 일부를 변경함.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으로, “10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보호”를 “시 공간정보의 보호”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서울시</u>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공간정보담당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 ----- ----- 시 ----- ----- -- 수립한다.</p> <p>② <u>시의 실·본부·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u>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u>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u>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u>10월 31일</u>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서울특별시</u> <u>공간정보의 보호</u></p> <p>제16조(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p><삭 제></p>	<p>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관리기관의 장은</u> ----- ----- ----- <u>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u> ----- -- <u>8월 31일</u> ----- -----.</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시 공간정보의</u> <u>보호</u></p> <p>제16조(보안관리) ① ----- ----- ----- ----- ----- ----- -----.</p> <p>② <u>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를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을 “시 공간정보 체계의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시”를 “시”로, “수립·시행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목록정보”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를 “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시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 공간정보의 보호

제16조의 제목 “(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를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위하여 공간정보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안심사)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4 및 영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24조의3에 따른다.

제20조(보고 및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u></p> <p>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서울시</u> 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공간정보담당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 (생략)</p> <p>제7조·제8조 (생략)</p> <p>제9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 (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시 공간정보체계의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u></p> <p>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시 ----- 수립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u></p> <p>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p> <p>제6조·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p> <p>제11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 목록정보-----</p>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위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안심사)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4 및 영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24조의3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보고 및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신 설>

계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